학교기업운영규정 10-1-7

규정번호 10-1-7
제정일자 2006.3.1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12차 개정
관리부서 산학협력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 학교기업 (이하 “학교기업” 이라 한다) 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학교기업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,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며, 인터넷, 컨설팅, 제품의 제조 판매 및 교육서비스 등을 수행한다.

제3조(명칭 및 종목) 학교기업 설치시 우리대학에 두는 학교기업의 명칭, 사업종목, 연계학과는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위치) 학교기업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134 명지전문대학 내에 두며, 소재하는 특별시 내에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.

제5조(업무)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기업의 운영활동과 학교의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현장실습
2. 학교기업 신기술의 기술이전
3. 제품 생산 및 판매를 통한 수익 사업
4. 외부 기업과의 공동 연구 및 수탁 생산

제2장 조 직

제6조(대표책임교수) ① 학교기업에는 총괄교수 및 대표책임교수를 두며 대표책임교수는 총장이 임용한다.(개정 2017.02.27.)

② 총괄교수 및 대표책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총괄교수는 산학협력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학교기업의 인사 및 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.(개정 2018.12.10.)

④ 대표책임교수는 학교기업을 대표하며, 총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 소속인원을 지휘·감독하며 소관업무를 통할한다.

⑤ 대표책임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하부조직) ① 학교기업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

② 학교기업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직원(계약직 포함)을 둘 수 있다.

③ (삭제 2013.09.23)

제3장<삭제(2024.7.24.)>

제8조(학교기업 운영) 우리대학 학교기업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산학협력위원회를 통해 심의·의결한다.(개정 2024.7.24.)

제9조<삭제(2024.7.24.)>

제10조<삭제(2024.7.24.)>

제4장<삭제(2024.7.24.)>

제11조<삭제(2024.7.24.)>

제12조<삭제(2024.7.24.)>

제13조<삭제(2024.7.24.)>

제5장 현장실습

제14조(현장실습 산업체 선정) ① 학교기업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 산업체로 인정하여,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한다.

②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교육촉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 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기 7일전까지 대표책임교수와 사전에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14조의2<삭제(2024.7.24.)>

제15조(현장실습 운영)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관련 법령과 우리대학 학칙,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을 따른다.(개정 2024.7.24.)

제6장 회 계

제16조(수입)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운영에 의한 수익금
3. 기증한 금품 및 물품
4. 학교기업 소유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
5. 기타 학교기업 사업에 의한 수입금 및 이자수입

제17조(지출)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
1. 시설·운영 지원비
2. 관리·운영비
3. 운영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
4.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
5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
6. 기타 학교기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

제18조(회계처리) ① 회계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수입과 지출,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.

②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할청장이 고시한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9조(보상금의 지급)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50% 범위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30%를 넘을 수 없다.

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월 일정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2항,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.

제20조(회계연도) 회계연도는 우리대학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7장 보 칙

제21조(비밀유지의무) 학교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자는 그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2조(해산) ① 학교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.

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명지전문대학에 귀속한다.

③ 해산시 대표책임교수는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.

제23조(공고)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명지전문대학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
1.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
2. 학교기업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
3. 사업수행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대표책임교수가 인정한 사항

제24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“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” 및 동 시행령과 “학교기업의설치·운영에관한규정”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폐지한다. 다만, 관련 규정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1. 정보기술학교기업규정
2. 아트세라믹학교기업규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칙) <2009.2.26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100> <생략>

<101> 학교기업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② 중 “교육인적자원부장관”을 “관할청장”으로 하고, 제6조①·③·④, 제7조③, 제8조②·③·④, 제11조③, 제18조②, 제22조①·③ 중 “학장”을 각각 “총장”으로 한다.

<102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직제규정) <2013.7.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29> <생략>

<30> 학교기업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“학생처장”을 “학생지원처장”으로 한다.

<31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) <삭제, 개정 2016.12.28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8조~제15조, 제3장, 제4장)